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93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송재봉 · 김남근 · 이연희
허성무 · 이광희 · 민병덕
권향엽 · 이강일 · 박정현
황명선 · 한준호 · 이수진
김우영 · 박 정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종속성이 심화되는 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내 소비자와 이용사업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수수료·정산기한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 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제도화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대금 정산기한 단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데이터 공유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규정하고, 우수 중개사업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역량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에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추가함(안 제20조의2 등).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판매대금 정산기한,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8).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설치함(안

제20조의9).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10).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과정에서 생성·획득한 정보를 이용사업자와 공유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11 및 제20조의12).

바. 판매대금의 신속한 지급,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거래 정보 공유 및 공개 등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우수한 중개사업자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13).

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1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이하 “중개서비스”라 한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서비스의 성격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개서비스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

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16.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라 한다)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7.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라 한다)란 중소기업 중 중개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18.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이용사업자가 중개사업자로부터 중개서비스와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고객관리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1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정보”란 중개사업자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수집 및 가공하는 다음 각 목의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사업자의 중개거래를 통하여 생산된 정보(이하 “중개거래 산출 정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사업자가 중개거래를 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정보(이하 “중개거래 계약 정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0.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란 동반성장지수 중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개사업자의 상생협력 실적 및 이용사업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를 “동반성장지수, 상생금융지수 및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로 한다.

4.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제3장의2(제20조의7부터 제20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상생협력 촉진

제20조의7(적용범위) 이 장은 국내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중개거래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개사업자가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의8(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2. 온라인 플랫폼 판매대금 정산기한
3.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이용사업자의 만족도
4.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협력 현황
5. 중개사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중개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9(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체) ①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약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10(판매대금의 신속한 지급) ①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판매대금 지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별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개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1(중개거래 산출 정보의 공유 요구 및 제공) ① 이용사업자는 중개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사업자와 관련된 중개거래 산출 정보 공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관련 중개거래 산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거래 산출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양식을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양식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중개거래 산출 정보의 공유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거래 산출 정보의 요구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개거래 산출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12(중개거래 계약 정보의 공개) ①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에 필요한 중개거래 계약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개거래 계약 정보의 공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개사업자의 중개거래 계약 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개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13(우수 상생협력 중개사업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0조의10, 제20조의11 및 제20조의12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0조의14(이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용사업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 및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1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이하 “중개서비스”라 한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서비스의 성격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개서비스에서 제외할 필요가
<u><신 설></u>	

<신 설>

<신 설>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
합된 서비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
자와의 연결수단 제공

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
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비스

16.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
자”(이하 “중개사업자”라 한
다)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
업자와 중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중
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를 말한다.

17.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
자”(이하 “이용사업자”라 한
다)란 중소기업 중 중개사업
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

<신 설>

<신 설>

여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18.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이용사업자가 중개사업자로
부터 중개서비스와 이에 부
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
제, 배송지원, 고객관리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중개사업자
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
다.

1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정보”란 중개사업자가 중개서
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수집 및 가공하는 다
음 각 목의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
사업자의 중개거래를 통
하여 생산된 정보(이하
“중개거래 산출 정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
사업자가 중개거래를 하
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

<u><신 설></u>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의2. (생략) <u><신 설></u> 7.·8. (생략) ③·④ (생략)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u>하 “중개거래 계약 정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20.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란 동반성장지수 중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개사업자의 상생협력 실적 및 이용사업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u>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u> 7.·8.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4. (생 략)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금융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⑥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동반성장지수, 상생금융지수 및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3장의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상생협력 촉진

제20조의7(적용범위) 이 장은 국내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중개거래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개사업자가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의8(온라인 플랫폼 실태조

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
다.

1.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2. 온라인 플랫폼 판매대금 정
산기한

3.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
폼 이용 현황 및 이용사업자
의 만족도

4.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협력 현황

5. 중개사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6.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
관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
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중개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정거래

<신 설>

<신 설>

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9(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체) ①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10(판매대금의 신속한 지급) ① 중개사업자는 이용사

<신 설>

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판매대금 지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별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개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1(중개거래 산출 정보

의 공유 요구 및 제공) ① 이
용사업자는 중개사업자에게 해
당 이용사업자와 관련된 중개
거래 산출 정보 공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중개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관련
중개거래 산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거래
산출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양식을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

<신 설>

우 표준양식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중개거래 산출 정보의 공유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거래 산출 정보의 요구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개거래 산출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12(중개거래 계약 정보의 공개) ①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에 필요한 중개거래 계약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개거래 계약 정보의 공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개사업자의 중개거래 계약 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개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0조의13(우수 상생협력 중개사업자 지원) 중소기업부장관은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0조의10, 제20조의11 및 제20조의12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0조의14(이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부장관은 이용사업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 및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